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군사보호구역내 통행제한 사전통지 규정 마련 등〉

■ 박정의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03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규정 신설 ..... | 2 |
| 2. 민·관·군 협의체 제도화 .....       | 5 |
| 3.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  |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 제3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규정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통행제한이 필요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9조의2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u>제9조의2(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①</u><br><u>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상의 필요</u><br><u>에 의하여 통행제한 조치 등을 취하</u><br><u>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u><br><u>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u><br><u>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통</u><br><u>지하여야 한다.</u><br><br><u>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의 방법</u><br><u>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br><u>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할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sup>. 접경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출입허가를 얻어 군사보호구역내 출입을 하고 영농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았더라도 군의 예상치 못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농업 활동을 적기에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불가피하게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입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출입허가 후 이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한 법률 근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과 같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통지가 어려울 경우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국방부는 개정안의 ‘통행제한 조치’를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출입제한 조치’로 명확히 하고,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적 긴급 상황 등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 민·관·군 협의체 제도화

###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민·관·군 협의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임(제9조의3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9조의3(민·관·군협의체 운영) ①<br>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농하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민·관·군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다. 검토의견

- 군사보호구역은 주민 거주지역이나 경제활동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주민 생활 여건이 저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경우 민·관·군 협의체<sup>2)</sup>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2) 군(지휘관, 참모 등), 지자체(기관장, 담당과장, 담당 등), 민(이장단, 농민회 등) 등으로 구성하며, 기존 상생협의체, 갈등관리협의체 등 유사한 성격의 협의체 등을 활용 하는 경우도 있음.

[민통선 이북지역 관할부대 협의회(13개) 운영 현황]

| 구분   | 2023 | 2024 | 2025.10월 현재 |
|------|------|------|-------------|
| 개최횟수 | 103  | 119  | 91          |

-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 보호와 민·군 갈등 예방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협의체의 주체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관할부대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군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을 때,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구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

| 법률명                           | 입법례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2조(보상협의회)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어촌·어항법                        |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통행제한 통지 등 영농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협의체 운영 주체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장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3.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 가. 개정안 요지

-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20조제1항제1호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u>&lt;신설&gt;</u><br><br>1. 2. (생략)<br>② ~ ④ (생략) | 제20조(손실보상) ① -----<br>-----<br>-----<br>-----<br>-----<br>-----<br><br>1. <u>군사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u><br>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은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군사보호구역내 영농활동 등의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출입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이 감내하는 권리제약이나 손실 중 일부라도 구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손실 발생의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예상 손실을 산정하는 기준 및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의미하는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출입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군사활동이 아닌 긴급한 군사적 상황 발생 등으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이며, 통제로 인한 실제 손실 발생 여부 입증과 손실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09 |